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시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5,757	14,049	24,902	57,319	27,031	1,484	974	0	0
국 비	56,525	9,590	6,322	26,312	13,697	605	0	0	0
시·도비	28,115	1,326	7,163	15,597	3,896	133	0	0	0
시·군·구비	41,117	3,133	11,417	15,410	9,438	746	974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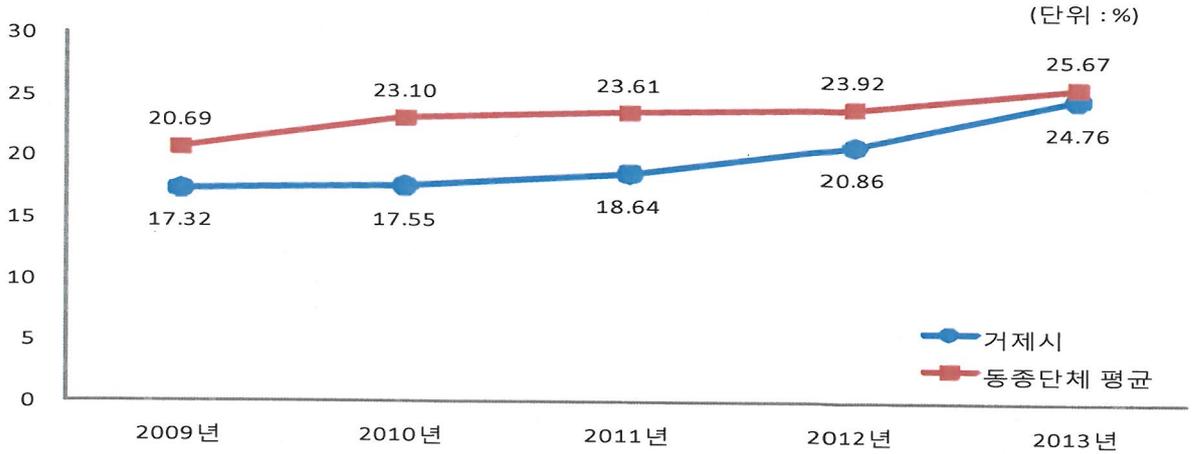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513,829	457,966	429,739	459,310	507,995
사회복지분야(B)	89,007	80,389	80,104	95,806	125,75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32%	17.55%	18.64%	20.86%	24.76%
인구수 (C)	225,522	228,355	232,787	236,944	242,077
주민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95	352	344	404	519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시의 사회복지비가 2012년 대비 2013년에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3년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지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2013년에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동종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7-2. 민간이전 보조금

■ 다음은 우리 시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507,995	46,713	9.2%	
민간경상보조 (307-02)	507,995	3,763	0.74%	
사회단체보조 (307-03)		466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3,950	0.78%	
사회복지보조 (307-10)		20,210	3.98%	
민간자본보조 (402-01)		18,324	3.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2013회계연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첨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3회계연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첨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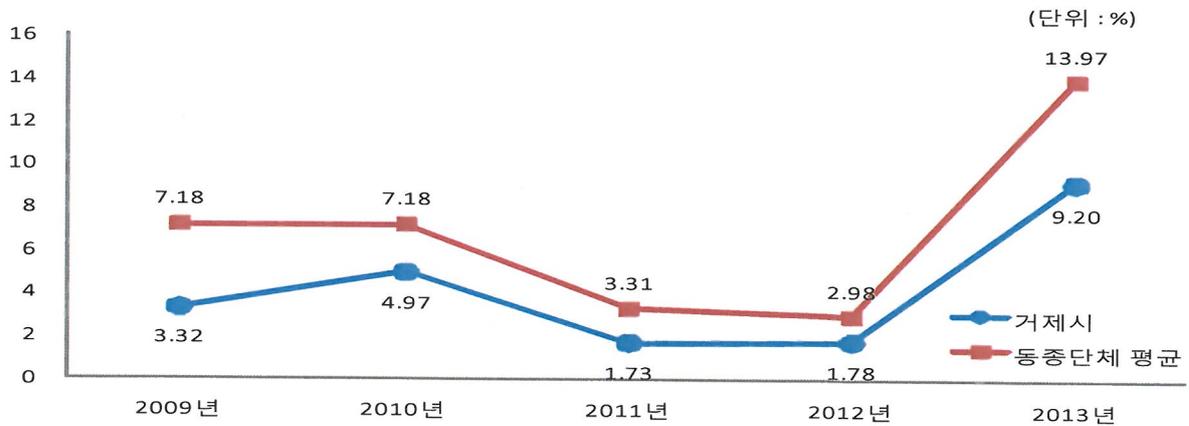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513,829	457,966	429,739	459,310	507,995
민간이전 보조금	17,054	22,773	7,431	8,180	46,713
비율 (%)	3.32%	4.97%	1.73%	1.78%	9.2%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민간이전 보조금의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보조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용어해설

☞ 민간이전경비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7-3.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시가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7,995	1,344	0.2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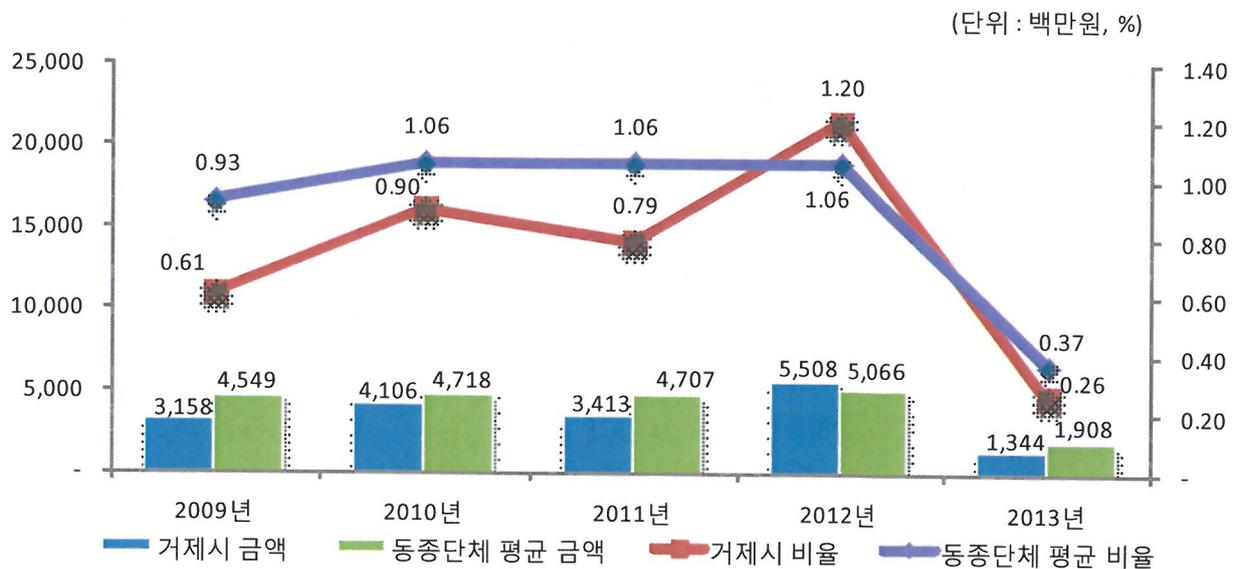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513,829	457,966	429,739	459,310	507,995
행사·축제경비	3,158	4,106	3,413	5,508	1,344
비율 (%)	0.61%	0.9%	0.79%	1.2%	0.26%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 우리 시의 행사·축제 경비 지출상황을 보면 2012년에 주요 증가 원인은 세계조선해양 축제의 개최로 인한 것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우리 시의 행사·축제 경비 지출금액, 비율이 작습니다.

용어해설

☞ 행사운영비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및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입니다.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이며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행사관련시설비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의 설치·구축 경비입니다.